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2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 강득구·강경숙·김기표

김성환 · 송재봉 · 양문석

이학영 · 임광현 · 임미애

전재수 · 채현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금을 노리고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 생명보험의 악용소지를 막기 위하여 15세 미만자, 심신미약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태풍 힌남노, 2024년 항공참사와 같이 15세 미만자가불의의 재난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 인하여유가족이 관련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15세 미만자도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 단서 중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 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 2. 15세 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 3.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보험사

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732條(15歳未滿者等에 對한 契	第732條(15歳未滿者等에 對한 契		
約의 禁止) 15歳未滿者, 心神喪	約의 禁止)		
失者 또는 心神薄弱者의 死亡			
을 保險事故로 한 保險契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	<u>다음</u>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u>있는</u>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u><신 설></u>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		
	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u><신 설></u>	2. 15세 미만자가 「재난 및 안		
	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제735		
	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되는 경우		
<u><신 설></u>	3.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		
	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